



로스쿨 도입 반대 이유와 대안

이 관 희 | 경찰대학교 교수

I. '법추협' 발족과 반대 이유

지난 3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학 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이하 '법추협')가 정식 발족되었다. 전국 천 명에 가까운 법학 교수 중 16개 메이저 대학(임의 구분)교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수(약 600명)가 참여하였고, 요즈음에는 메이저 대학 교수들도 심정적으로는 대체로 법추협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법추협은 현재의 법과대학교육이 과행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제도와 법과대학의 커리큘럼을 개혁하고 법과대학의 교수 인원과 시설을 확충한다면 최소의 비용(로스쿨 도입 비용의 절반 이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제까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끈끈하게 대학 강단을 지켜 온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

첫째,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전문법조인이나 생활법조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TO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법조인은 예컨대 노사관계, 환경규제, 국제금융, 국제거래, 공정거래, 증권분쟁, 신용보증,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 지적재산권 등 21세기 사회적 분쟁 해결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말하는 것이다. 즉 로스쿨 졸업자라 하더라도 전문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하버드 로스쿨은 3년제인 로스쿨에서 3학년 학생들이 거의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처하자 로스쿨을 2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수 년째 검토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로펌이 1학년 때의 성적을 기준으로 취업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2, 3학년 때는 공부를 등한시하고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또한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가 직접 개업하는 일은 거의 없고, 반드시 로펌이나 기업, 법원·검찰·정부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일하면서 수련을 쌓게 된다는 것이다(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 2004.4. 진경준 검사 토론문, 164쪽). 이로 보건대 하버드 로스쿨에서 잘 가르쳐서 곧 실무에 능통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생각

컨대 미국의 경우, 학부에서 우수한 졸업생들이 판례법체계에서 소크라테스식 수업방법 등으로 합리적 결론(Legal Reasoning)에 이르는 방법을 잘 터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방대한 성문법 체계인 우리의 경우는 다른 것이다. 또한 “미국 학생들은 로스쿨 수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수업에 잘 참여해야 좋은 성적을 받고, 로스쿨 성적이 좋아야 좋은 로펌에 취업하거나 판사 또는 검사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 이수형 기자 토론편, 130쪽).”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법과 대학 성적까지 법조선발시험에 고려될 수 있다면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전문화의 문제는 영국이나 유럽식으로 법의 기본이론을 먼저 익히고 법조인 수습과정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전문화의 방향을 찾는 것이 방대한 성문법 체계인 우리의 경우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판례법 체계인 미국에서는 3년 동안 어느 정도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우리 법체계에서는 3년 동안으로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 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래서 작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비(非)법과 출신들이 법과 출신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법조자격시험에 비법과 출신이 제대로 합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대로 하자면 미국식으로 학부에 법학과까지 없애야 하는데, 될 법한 얘기인가?

또한 생활법조인은 변호사 문턱을 낮춰야 가능한 것이지 로스쿨식 교육으로 저절로 해

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로스쿨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50여 년 쌓아 온 기존의 법학교육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보다 더 큰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린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사회 각 분야가 빠른 템포로 발전해가는 전략에서 볼 때 학부 4년 전공을 마치고 로스쿨 3년은 너무나 느린 법조인 양성이고 한가한 발상이다. 원래 대학은 국가발전의 기본토대로 전공 각 분야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도 모자랄 판에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공을 흔들여 놓을 이유가 무엇인가. 법률은 국가사회 발전에 질서적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다른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수한 인재가 각 분야를 균형있게 이끌어가야지 법조인 쪽으로 몰려와서는 안 된다. 미국은 그 특유의 사정으로 로스쿨을 발전시켜 오늘날 정착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본다. 21세기 10년은 20세기 근 30년에 버금가는 변화의 시기인데 그 사이 공백과 혼란 및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국가경쟁력의 저하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셋째, 대학교육 전체의 혼란이다. 로스쿨 목표로 적성과는 무관하게 입학·졸업이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대학교육이 파행에 이를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학비도 엄청나서 돈 없는 학생은 엄두도 못 낸다. 그리하여 로스쿨식 교육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법학교육과 대학

“

이번 로스쿨 결정은 법학교육개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법추협은 이 기회를 가장 효과적인 법학교육정상화와 사법 개혁의 계기로 삼아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법시험·법조양성·법학교육 제도 개혁의 방법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법추협은 그 취지를 로스쿨안(정부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음)보다

훨씬 앞서는 비교우위 안으로 만들어 정부안과 경쟁하면서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

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게 되는 지나치게 모험적인 것이어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영국식으로 학부 4년 정도의 철저한 교양과 법이론 교육을 받은 자를 빠르게 법조인으로 선발하고, 그 후 수습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 분야로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는 다른 성문법체제인 우리로서는 현재의 법학교육체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낭비 없는 효과적 방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 노력과 비용의 반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넷째, 이번 사개위의 로스쿨 결정은 일본이 2004년부터 도입·시행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여러 면에서 실패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본 로스쿨 졸업생의 30% 이상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어렵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학과 출신 학생들을 실력 면에서 따라가지 못하여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국식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21세기 급변하는 IT 정보화 사회에서 각 분야가 균등히 초고속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대학교육을 마치고 뒤늦게 로스쿨로 몰려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그것은 과거 한가했던 시대에 미국 특유의 한가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50여 년 우리 민주법학교육의 전통을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도 못하면서 대학교육의 대혼란만을 초래하고,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재검토되어야 하고, 작년(2004)부터 도입한 일본 로스쿨 제도의 실패 분위기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사개위에서 로스쿨 결정이 없었다면 평소 법학교수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법추협의 법학교육정상화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어려운 문

제였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로스쿨 결정은 법학교육개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법추협은 이 기회를 가장 효과적인 법학교육정상화와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법시험·법조양성·법학교육 제도 개혁의 방법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법추협은 그 취지를 로스쿨안(정부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음)보다 훨씬 앞서는 비교우위안으로 만들어 정부안과 경쟁하면서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II. 법학교육 정상화방안(대안)

1. 사법시험제도 개혁

1) 사법시험을 법조인 선발시험으로 하고, 법무부가 관리한다.

법조인은 판사, 검사, 행정기관(군 포함)이나 국영기업체의 법무담당관, 로펌·기업 등의 고용변호사(법조 직역확대의 의미) 또는 개인변호사를 말한다.

2) 법조인 선발 인원은 WTO 법률시장개방 체제에서 법조 '쓰나미'를 대비하여 1~2 천명 선에서 매년 법무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천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조의 문턱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미이고, 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법조 전문화와 생활법조 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법조인 선발시험 대상자는 4년제 법과대학이나 법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 평균 C학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자격

시험으로 하지 않고 선발시험으로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출제가 어렵고 어차피 선발 숫자를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철저한 상대평가에 의한 C학점 이상인 자를 선발 대상으로 함으로서 학생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함이다. 그로써 신입생을 중심으로 한 비정상적인 고시열풍은 수그러질 것으로 본다.

4) 시험 방법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써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하되, 법률시장 개방시대에 국제변호사 양성을 위하여 일부과목은 토플 상급 수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법조인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정한다.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면 주관식 평가는 그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기 때문에 선발시험을 미국 BAR 시험같이 객관식으로 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현재 2차 사법시험 같은 넓은 분야에서 2, 3 문제 논술하고, 그것을 교수가 몇 달을 걸려서 채점하는 식의 비합리적 방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과목을 토플로 대체 가능토록 한 것은 국제화시대에 영어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조인 채용 방법 개혁

법조인 채용은 영국식으로 상기 법조인 선발시험 합격자 중 그 시험성적과 대학성적을 고려하여 각 직역별로 실시하되 2년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대학성적 고려는 대학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 2년의 수습기간 중 1년은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보다 전문화시켜 수료를 의무화하되 수업료는 각자 부담을 원칙

으로 한다(채용기관에서 납부해 주는 것은 관계없다). 개인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개업할 수 있다. 영국은 법과대학(3년제 : 모든 학부가 3년제임) 졸업 후 실무수습 교육기관인 로스쿨은 1년으로 변호사협회의 요구사항 등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데,¹⁾ 우리의 사법연수원도 지금까지 아주 탄탄한 연수기관으로 성장하였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3. 법학교육 개혁

1)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 졸업이수 학점을 과거와 같이 160학점 이상으로 하고, 그 중 교양과목을 40학점 이상, 50학점 이하로 한다. 법과대학을 현행 학부제 140학점의 틀에서 독립시켜야 하는데, 의과대학 6년제를 보면 최소한의 요구라 할 것이다.

2) 전국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의 성적관리는 균일한 기준에 의한 엄격한 상대평가를 해야 하며, 주관식 논술시험이나 리포트(객관식 시험 배제)에 의하여 실시한다. 예컨대 C 학점 이상을 80%로 하면 학생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대학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

3) 법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법정 교수 인원, 예컨대 교수 대 학생 비율 1 : 25 및 교육시설 확보)해야 한다. 당연히 법정요건을

지킨 법과대학 졸업자에 한하여 법조인 선발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많은 수의 교수 충원이 예상되고, 그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법학교육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로스쿨도 많은 수의 전문 분야 교수가 있을 뿐이지 그곳을 졸업하는 학생이 특정 분야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법과대학 대학원 입학도 상기 법조인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

이관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에서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헌법학회장, 인터넷법학회장, 법추협(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민주헌법론 I, II』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치개혁의 입법적 과제”, “민주주의와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 등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

1) 이관희, '정보화시대의 법학교육 개혁방향 (인터넷법학회 학술발표회 주제발표, 홈페이지게재, 2005.1.12. 국회헌정기념관) 참조

영국의 경우 우수한 법과대학생은 3년간의 이론교육과 1년간의 실무교육(우리나라 사법연수원과 유사한 것이라 해도 좋을 것임)으로 법조자격을 부여받고 각 분야의 2년간 연수를 마치면 그 분야의 전문 정식의 법조인(검사·변호사)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전문성 면에서 구체적이고 빠른 적응인가? 그것이 바로 법조경쟁력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